

안산시 농어업재해 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9-385
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2024. 2.19
제 출 자 : 안 산 시 장

제안이유

- 어업재해 및 어업인의 정의에 대한 상위법령 근거 마련 필요
- 자연재난 관련 상위규정 명칭 변경에 따른 정비

주요내용

- “어업재해” 정의에서 「농어업재해대책법」 상위법령 근거 조항 명시(안 제2조제2호)
- “어업인” 정의에서 「수산업·어촌 발전 기본법」 상위법령 근거 조항 명시(안 제2조제6호)
- “지원대상”에 「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에서 「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명칭 변경(안 제4조)
- “재난지수 산정”에 「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에서 「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명칭 변경(안 제7조제1항)

개정조례안 : 【붙임 1】

신·구조문대비표 : 【붙임 2】

관계법령발췌서 : 【붙임 3】

관련사업계획서 : 해당사항 없음

예산수반사항 : 【붙임 4】

※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

사전예고(결과) : 의견없음

○ 입법예고 : 2023. 12. 29. ~ 2024. 1. 18. (20일간)

기타 참고사항

○ 현행조례 : 【붙임 5】

○ 방침결정문 : 【붙임 6】

【붙임 1】

안산시 농어업재해 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안산시 농업재해 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「농어업재해대책법」 제2호제2호”를 “「농어업재해대책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2호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 중 “「농어업재해대책법」 제2조제3호”를 “법 제2조제3호”로, “제5조제2항”을 “법 제5조제2항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호 중 “「농어업재해대책법」 제2조제10호”를 “법 제2조제10호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호 중 “「농어업재해대책법」 제2조제12호”를 “법 제2조제12호”로 하며, 같은 조 제5호 중 “「농어업재해대책법」 제2조제4호”를 “법 제2조제4호”로 하고, 같은 조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6. “농어업인”이란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 제3조제2호와 「수산업·어촌 발전 기본법」 제3조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

제4조 중 “「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”을 “「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”으로 한다.

제7조제1항 본문 중 “「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”을 “「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”으로 한다.

제7조제2항 본문 중 “해당하는 자에 한하여”를 “해당하는 사람에 한정하여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소관 실·과		농업정책과
입	실·과장 직위·성명	농업정책과장 김 행 련
안	담당·팀장 직위·성명	지역농산물유통팀장 강 선 희
자	담 당 자 성명·전화	유 인 선 (행정 2318)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2조 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“농업재해”란 「<u>농어업재해대책법</u>」 제2조제2호에 따른 피해 중 한해·수해·풍해·냉해·우박·서리·설해·동해·병충해 등 자연 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업용 시설·농경지·농작물의 피해를 말한다.</p> <p>2.“어업재해”란 「<u>농어업재해대책법</u>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이상조류(異常潮流), 적조현상(赤潮現象), 해파리의 대량발생, 태풍, 해일, 이상수온(異常水溫), 그 밖에 <u>제5조제2항</u>에 따른 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산양식물 및 어업용 시설의 피해를 말한다.</p>	<p>제2조 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----- 「<u>농어업재해대책법</u>」 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<u>제2조제2호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2.----- <u>법 제2조제3호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법 제5조제2항</u>----- ----- ----- -----.</p>

3.“농업용 시설”이란 「농어업
재해대책법」 제2조제10호에
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.

4.“어업용 시설”이란 「농어업
재해대책법」 제2조제12호에
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.

5.“농작물”이란 「농어업재해대
대책법」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
작물을 말한다.

6.“농어업인”이란 「농어업·농
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 제
3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
한다.

7. (생략)

제4조(지원대상) 안산시 관내에서
농어업재해에 의하여 직접피해
가 발생하였으나, 「재난구호
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
에 관한 규정」 제6조제8호에 따
른 국고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
경미한 피해에 대하여 예산의
범위에서 복구지원금을 지원할
수 있다.

제7조(재난지수 산정 및 복구비
지원) ① 재난지수 산정은 「재
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

3.----- 법 제2조제
10호-----
-----.

4.----- 법 제2조제
12호-----
-----.

5.----- 법 제2조제4호-

-----.

6.“농어업인”이란 「농업·농촌
및 식품산업 기본법」 제3조
제2호와 「수산업·어촌 발전
기본법」 제3조제3호에 해당
하는 자를 말한다.

7. (현행과 같음)

제4조(지원대상) -----

----- 「자연재난
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
에 관한 규정」 제6조제8호--

-----.

제7조(재난지수 산정 및 복구비
지원) ① ----- 「자
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

